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06호, 2022. 6.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 이내) 및 성능검사, 일반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점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 유효기간 설정 (안 제16조의2 신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간이측정기를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다시 인증을 받도록 함.

나. 성능검사 실시 (안 제16조의3 신설)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성능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 및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방법 및 기준은 별표1(성능인증 등급)을 따라야 함.

다. 성능인증기관 지정 요건 추가(안 제17조제1항제3호 개정 및 제4호 신설)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기관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추가

라. 성능점검 기준·주기·방법 등 (안 제18조의2, 안 별표1의2 신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점검 기준, 주기, 방법 및 절차 신설

마.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 마련 (안 제18조의3, 안 별표3의2 신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사용정지, 재점검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바. 성능점검 수수료 및 반환규정 신설 (안 제20조 개정, 별표6 신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 수수료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사. 성능점검 실시를 위해 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의 자격 기준 명확화 및 장비기준 추가 (안 별표 2 개정)

아. 성능점검 신청서, 성능점검기록부, 성능점검 증명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제3호의2서식, 별지제3호의3서식 신설)

자. 성능인증신청서 처리기간 표현 명확화 (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차. 성능인증서 서식 영문 번역내용 추가(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성능인증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6조의3(성능검사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 제작·수입한 측정기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성능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1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따른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검사기관”을 “검사기관 또는 시험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자의 측정기기 성능점검 등)

① 제18조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측정
결과를 공개하기전에 성능인증기관에서 최초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며,
최초성능점검을 받은 날부터 2년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성능점검 신청서와 별지제3호의2서식의 성능점검기록부를 성
능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능점검 신청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은 별표 1의2에
따른 적합여부를 판정하여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성능점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그밖에 측정기기의 성능점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
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20조제1항 중 “성능인증을”을 “성능인증이나 성능점검을”로,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별표6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성능인증기관의 사유로 성능인증 또는 성능점검 업무 수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 또는 성능점검을 착수하기 전에 성능인증 또는 성능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그 등급이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평가를 위한 수수료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 중 “환경측정분석사로서”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란 3) 중 “또는 석사로서”를 “자격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을 “실무경력이 10

년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2) 중 “환경측정분석사로서”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란 3) 중 “또는 석사로서”를 “자격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에 나목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현장성능점검을 위한 입자 발생장치 또는 동등한 성능이상의 장비	3별 이상
---------------------------------------	-------

별표 3의2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7일”을 “7일(평가기간 제외)”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측정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측정기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성능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자는 사용하고 있는 측정기기에 대해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4조(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1. 성능점검의 방법

- 가. 성능점검은 의뢰자가 직접 해당 측정기기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측정기기가 설치된 현장에서 실시한다.
- 나. 성능점검은 현장성능점검과 반입성능점검에 따라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 1) 현장성능점검이란 측정기기가 설치된 현장에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 2) 반입성능점검이란 측정기기를 성능인증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 다. 점검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기록하며, 측정기기의 성능을 확인한 결과는 그 결과값을 점검결과 옆에 숫자로 표시한다.

2. 성능점검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가. 현장성능점검

	반복재현성	정확도
적합	80 % 초과	80 % 초과
부적합	80 % 이하	80 % 이하

나. 반입성능점검

	반복재현성	정확도
적합	80 % 초과	80 % 초과
부적합	80 % 이하	80 % 이하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제18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단,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4항 제1호	사용 정지	
나.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 제2호	경고	사용 정지
다. 성능점검의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 제3호	재점검	사용 정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수수료(제20조제1항 관련)

1.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수수료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가. 성능인증 수수료: 500만원 이하

나. 성능점검 수수료: 100만원 이하

2. 성능인증 수수료

대상 측정기기	수수료(원)	비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4,271,000원	- 반복재현성 항목: 822,000원 -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항목: 3,449,000원

3. 성능점검 수수료

대상 측정기기	수수료(원)	
	가. 현장 성능점검	나. 반입 성능점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484,000원	419,000원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수수료에 가산할 수 있다.

성능점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기기명칭	제작자	상품명 (고유명칭)	기기고유번호	수 량	성능점검방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 현장성능점검 ☐ 반입성능점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능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측정기기 성능인증서
------	------------

인증번호(Certificate No.) : 제 호

성능인증서

(Certificate of performance for PM-2.5 air sensor)

상호 (Company Name)		
대표자 성명 (Representative Name)		
사업장 소재지 (Address/Plant)	(전화번호(Tel) :)	
인증내용 (Certification Detail)	제작자(Manufacturer)	제작국가(Country of manufacture)
	기기명칭(Device name)	측정방식(Measurement method)
	상품명(고유명칭, Product name)	측정범위(Measurement range) 최소(Minimum): 최대(Maximum):
	최소눈금 Minimum resolution (단위, unit)	공인측정 오차범위(Error range) ±
	성능인증 등급(Grade of performance certification) ☐ 1등급(Grade of 1)* ☐ 등급외(Out of Grade) * A sensor, which is certified as Grade 1, shows over 80 % accuracy by matching the reference monitoring data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is to issue the above mentioned Certificate of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1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and Article 16-3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년 월 일
(Year / Month / Date)

QR코드

성능인증기관장
Head of Performance
Certification Body

직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기록부

제 작 자	
상 품 명	
성 능 인 증 번 호	
성 능 인 증 연 월 일	
기 기 고 유 번 호	
취 득 연 월 일	

성능점검내용

성능점검일	점검결과	점 검 자		점검자 날인	비 고
		소 속	성 명		

제 호

성능점검 증명서

QR코드

상 품 명:

점 검 일 자:

유 효 기 간: . . . 까지

성능인증번호:

제 작 자:

기기고유번호:

점 검 기 관:

점 검 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거친 간이측정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성능인증기관 직인

< 비고 >

1. 성능점검 증명서는 간이측정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
2. 간이측정기에 붙이는 면을 고려하여 성능점검 증명서의 규격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2(성능인증의 유효기간)</u>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u><신 설></u>		<u>제16조의3(성능검사 등)</u>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 제작·수입한 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② 성능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u> <u>별표 1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u> <u>따른다.</u>
제17조(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 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 정을 받은 <u>검사기관</u>	3. ----- ----- ----- <u>검사기관 또는 시험</u> <u>기관</u>
<u><신 설></u>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 <u>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u> <u>소</u>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제18조(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가 <u>법 제24조제4항</u> 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 ----- ----- ----- <u>법 제24조제6항</u> ----- ----- ----- -----.

1. ~ 3.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자의 측정기기 성능점검 등) ① 제18조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측정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성능인증기관에서 최초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며, 최초 성능점검을 받은 날부터 2년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성능점검 신청서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성능점검기록부를 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능점검 신청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은 별표 1의2에 따른 적합여부를 판정하여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성능점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그밖에 측정기기의 성능점검

<신 설>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성능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기간,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20조(수수료) ① -----
----- 성능인증이나 성능점검을 -----
----- 별표6에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성능인증기관의 사유로 성능인증 또는 성능점검 업무 수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u>3.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 또는 성능점검을 착수하기 전에 성능인증 또는 성능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u> <u>4.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그 등급이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평가를 위한 수수료</u>
--	---